

# 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## 제 1장 총 칙

### 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(주)화승알앤에이(이하 "회사")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(설치, 권한 및 기능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 및 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,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 및 본 규정에 기재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, 의결할 수 있다.
  - 가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다.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및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(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  - 라.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마.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폐기
  - 바.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, 이사회 등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

## 제 2장 구 성

### 제 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.

### 제 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5조 (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출석 등)

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
### 제 6조 (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)
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 3장 회 의

### 제 7조 (위원회 개최)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소집한다.

### 제 8조 (소집절차)

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 9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0조(이사회와의 관계)

-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모든 이사에게 즉시 통지되며,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에 이사회 소집을 이사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전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 제 4장 부의사항

### 제11조(부의사항)

위원회는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위임한 아래 사항으로 한다. 다만, 증권거래소 등 외부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의결 및 의사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본 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한다.

- ① 투자에 관한 사항
  - ㄱ.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외 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대한 결정
  - ㄴ.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의 철수에 대한 결정
  - ㄷ.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의 10%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혹은 처분에 대한 결정
  - ㄹ.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대한 결정
- ②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
  - ㄱ. 자기자본의 10%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만기 1년이내의 단기 자금의 차입에 대한 결정(기존 단기차입금 상황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)
  - ㄴ. 자기자본의 5%이상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에 대한 결정
  - ㄷ. 자기자본의 5%이상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대한 결정 (담보제공은 타인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, 채무보증에서 입찰, 계약, 하자,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 보증은 제외함)
  - ㄹ. 자기자본의 5%이상 금전대여(타인에 대한 선급금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)에 대한 결정
- ③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
  - ㄱ. 직전 사업년도말 매출액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중단 또는 정지, 거래중단 또는 제품의 수거나 파기 등에 대한 결정
  - ㄴ. 직전 사업년도말 매출액의 10%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의 중단 또는 폐업의 결정
- ④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  - ㄱ.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정책의 결정
  - ㄴ. 중요한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 - ㄷ. 중요한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또는 기술이전, 기술제휴
  - ㄹ. 신물질, 신기술 관련 특허권의 취득, 양도 등 처분과 양수
  - ㅁ. 회사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
  - ㅂ.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  - ㅅ.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원칙의 결정 및 변경
  - ㅇ. 회사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- ㅈ. 대표이사가 신속한 경영판단 등의 필요에 따라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정한 사항
- ⑤ 기타 증권거래소 공시 또는 외부기관에서 위원회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재무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법령 및 정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경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기로 한 사항

## 제 12조 (위 임)

본 위원회에서 부의되어 결의된 사항의 세부사항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위원회 결의내용의 목적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.

## 제 5장 기타사항

### 제 13조 (질서유지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 14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제 15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도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### 제 16조 (규정의 개폐)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- 부 칙 -

1. 이 규정은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.